

미국 · 캐나다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기준

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국제기준(ISPM No.15)이 채택되고 캐나다, 미국 등이 국제기준에 따라 목재 포장재 검역을 200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, 미국 · 캐나다의 새로운 규정이 전면 시행될 경우에는 소독 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소독처리마크를 각 목재포장재에 찍어야 합니다. 목재포장재 업체 및 해당국 수출업체는 이러한 목재포장재 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 ---편집자 주



□ 캐나다

○ 수입요건

- 국제기준(ISPM No.15)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(열처리, MB훈증)처리되어야 하며,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이 승인한 공식적인 마크 또는 로고가 각각의 포장재에 찍혀야 함.
- 새로운 목재포장재 수입요건이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 새로운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소독처리마크 표지 또는 위생증명서 발급 가능함.
- MB훈증소독의 경우 2004. 1. 2.부터 11℃ 이상에서 처리된 것만 인정됨
- 동절기에는 가온하여 MB훈증소독 하거나 또는 열처리(56℃ 30분)하여 수출해야 함.

□ 미국

○ 수입요건

- 국제기준(ISPM No.15)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(열처리, MB훈증)처리되어야 하며, 소독처리 마크가 포장재에 찍혀야 함.
- 미국은 새로운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미국의 소독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소독처리된 것이나 개정 시행될 소독처리 기준으로 소독처리된 경우 현재와 같이 소독사항이 부기된 위생증명서 발급 가능함.
- 미국은 현행 소독처리기준과 새로운 소독처리규정 모두 인정됨
- MB훈증소독의 경우 4.5℃ 이상에서 처리된 것도 인정

<미국 · 캐나다 목재포장재의 신 · 구 MB훈증 소독처리기준 비교>

1. 현행 MB훈증 소독처리기준

온도	약량(g/m ³)	시간별 최저가스농도(g)			
		30분	2시간	4시간	16시간
21℃ 이상	48	36	36	27	25
4.5~21℃	80	60	60	46	42

2. 2004. 1. 2.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목재포장재 MB훈증 소독처리기준

온도	약량(g/m ³)	최소농도 (g/m ³)			
		30분	2시간	4시간	16시간
21℃ 이상	48	36	24	17	14
16℃ 이상	56	46	28	20	17
11℃	64	48	32	22	19